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22
----------	--------

제출년월일 : 2004. 2. 4

제출자 : 파주시장

□ 재안이유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아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지연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해소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문대상을 선별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함 (안 제28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3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과 ☎ 940-4712
입 안 자	도 시 과 장	김 영 구
	도시개발담당	김 진 영
	담 당 자	김 달 수

2004년 2월 12일 (목)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전 문 위 원 채 우 병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아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지연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해소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문대상을 선별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함.(안 제28조)

□ 검토의견

- 동 조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환경친화적인 미래 도시개발, 자연환경의 보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2003. 7. 1 전면 개정된 조례로서
- 개발행위허가 관련 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기구가 상설 운영되지 않아 행정처리 절차로 인한 많은 민원서류의 처리지연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민원해소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자문대상을 선별하여 필요시 자문을 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신축, 물건적치,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 대상사업(용도지역에 따라 개발면적 1,000㎡ 이상~30,000㎡ 미만)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완화되는 것이며, 아파트건설, 공장설립 등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중요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 그리고 일률적인 의무적용으로 민원인에게 불편만 주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